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
| 의안 번호 | 1284 |
|----------|------|

2020.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0. 2. 5. 이경선 의원 발의 (2020. 2. 12. 회부)

2. 제안이유

- 2021년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추진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개의 요건, 소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6항)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 민간전문가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2020년 2월 5일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안 제10조제6항, 안 제10조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u>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u> <u>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u> <u>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u> <u>성으로 의결한다.</u> ⑦ (생략)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재적위원</u> <u>과반수</u> ----- ----- ----- ----- ----- ⑦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 <u>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u> <u>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u> <u>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② <u>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u> <u>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u> <u>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u> |

| 현행 | 개정안 |
|----|--|
| | <p>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p> |

○ 비엔날레 관련 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조직위원회와 실무적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직위원회는 구성된 적이 없고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조직위원회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토대로, 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되,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성격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 좀 더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대부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것과는 달리, 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매 회 6명 이상 위원 구성과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 즉,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17명(당연직 9명, 위촉직 8명)) 중 3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운영위원회가 실무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중 그때그때 회의 안전에 적합한 위원들로 구성하되 비교적 소수가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기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추정됨.

○ 제2회 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최소 6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한 것

으로 나타나(붙임1), 비엔날레와 관련한 단독 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제고와 이를 위하여 개의를 조건을 강화하더라도(매회 구성원 과반수(3명) → 재적위원 과반수(9명)) 운영위원회 운영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이 개정조례안에서 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바, 홍보·전시 등 주요 현안 업무가 소위원회를 통해 밀도 있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성격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직까지 조직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직위원회의 존폐 여부를 포함하여 비엔날레 관련 위원회의 체계·운영 등이 전반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운영위원회와 조직위원회 비교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구분 | 조직위원회(조례 제7,8조) (미구성) | 운영위원회(조례 제9,10조) ('17.5.18.~) |
|----|---|--|
| 역할 | - 사업계획, 예산 등 주요사항 승인 | -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실무 |
| |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회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등 | ·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구성 | · 위 원 장 : 시장 · 부위원장 : 행정1,2부시장 및 외부전문가 · 위 원 : 총괄건축가,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 · 위 원 장 : 시장이 임명 ·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 원 : 市간부, 시의원, 출연기관 대표, 외부전문가 |

“민간전문가 운영규정 보완” (안 제11조의2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u>시장이</u> 정한다. |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u> |

○ 서울시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전문가 조례)에서 규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민간전문가 조례 적용을 제외토록 되어 있는 가운데¹⁾,

이 개정조례안은 비엔날레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민간전문가 조례²⁾ 및 관련 지침(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에서는

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서류·면접) 통해 민간전문가를 위촉
 토록 하고 민간전문가 대가는 자문 건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반면,
 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큐레이터)는 관련 방침
 및 협약에 따라, 각각 운영위원회 추천·선정 및 총감독 지명으로 위
 촉되고 있고 대가는 일정 시점에 분할 지급됨으로써(붙임2) 민간전
 문가 조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서 비엔날레 관련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및 대가지급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비엔날레 민간전문가 업무
 의 특수성과 그 운영현황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
| 담 당 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
| 연 락 처 | 02-2180-8206 |
| 이 메 일 | rienrien@seoul.go.kr |

1. 일반자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붙임 1> 제2회 비엔날레 운영위원회('18~'19) 개최현황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연 번 | 심의일자 | 안 건 | 참석자 수 | |
|--------|------------|---|-------|-----|
| | | | 당연직 | 위촉직 |
| 1 | 2018-3-9 | - 2019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안) - 2018년도 서울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 서울비엔날레 실무위원회 구성 | 4 | 6 |
| 2 | 2018-6-8 | - 2017 서울비엔날레 백서 제작 용역 중간 보고 - 2019 서울비엔날레 추진계획 보고 - 서울비엔날레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추진계획 보고 - 서울비엔날레 해외 홍보 행사 결과 북 - 서울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보고 | 3 | 7 |
| 3 | 2018-7-26 | - 2017 서울비엔날레 백서 최종 보고 | 서면심의 | |
| 4 | 2018-10-10 | - 2019 서울비엔날레 예산안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큐레이터 선정 - 2019 서울비엔날레 컨퍼런스 개최 -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안 | 1 | 6 |
| 5 | 2018-12-03 | - 홍보 및 민간재원 확보 전략수립 컨설팅 추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큐레이터 선정 -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 5 | 5 |
| 6 | 2019.3.18 | - 2019 프리비엔날레 개최 계획 -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구성 및 향후 추진일정 - 2019년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안) - 서울비엔날레 큐레이터 추가 선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19년도 대가 협약(안) - 서울비엔날레 「실무자문단」 운영계획(안) | 4 | 6 |
| 7 | 2019-4-25 | - 2019년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안) - 개·폐막식 행사 계획 - 홍보 현안 보고 - 입장권 판매 계획 - 시민참여프로그램 추진 계획 - 세계총괄건축가 포럼 개최 계획 - 2021년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계획(안) - 코디네이터 추가 선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 3 | 4 |

| 연 번 | 심의일자 | 안 건 | 참석자 수 | |
|--------|------------|--|-------|-----|
| | | | 당연직 | 위촉직 |
| 8 | 2019-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서울비엔날레 세부계획 - 2019 서울비엔날레 추진현황 보고 - 공식 후원(파트너) 유치현황 및 계획 - 개·폐막식 기획자 선임 및 행사개요 - 개막주간 계획 - 입장권 판매 등 기타 운영계획 - D-100 홍보행사 결과 - 전시 세부계획 | 5 | 6 |
| 9 | 2019.7.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폐막식 추진계획 - 시민참여 프로그램 세부계획 - 입장권 사전판매 및 국내외 홍보추진 현황 -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 2021년 제3회 총감독 선임 계획 | 2 | 6 |
| 10 | 2019.12.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비엔날레 개최결과 - 2019 서울비엔날레 성과 | 3 | 3 |

<붙임 2> 비엔날레 민간전문가 운영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제3회 총감독 선임 경위

- '19. 6. 4 : 제3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9. 6.~7. : 제3회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2회)
- '19. 7.25. : 2019년 제4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승인
- '19. 8. 6. : 202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직 수락(도미니크 페로)
- '19. 8. 6. : 운영위원회 승인
- '19. 9. 25. : 202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 '20. 3.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협약체결(서울시↔총감독)

□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민간전문가 1인당 업무사례비

- 총감독 사례비 : 100,000,000원(※1,2회 총감독 사례비 기준)
- 총괄큐레이터 사례비 : 57,600,000원(※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단가기준)
- 큐레이터 사례비 : 43,200,000원(※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단가기준)
- 보조큐레이터 사례비 : 28,800,000원(※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단가기준)

(단위:천원)

| 구 분 | 지급기준 | 단 가 | 참여개월(단가) | | | 인 원 | 총 예산 (18개월) | | |
|---------|-------------------|---------|---------------------|----------------------|--------------|--------|----------------|---|---------|
| | | | 2020년 (1차년, 7개월) | 2021년 (2차년, 11개월) | 총금액 (1인당) | | | | |
| 총 감독 | 1,2회 총감독 사례비 기준 등 | 100,000 | 1식 | | | 1 | 100,000 | | |
| 총괄 큐레이터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3,200 | 7 | 22,400 | 11 | 35,200 | 57,600 | 1 | 57,600 |
| 큐레이터 |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 2,400 | 7 | 16,800 | 11 | 26,400 | 43,200 | 4 | 172,800 |
| 보조 큐레이터 | 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 1,600 | 7 | 11,200 | 11 | 17,600 | 28,800 | 4 | 115,200 |

□ 제3회 총감독 업무사례비 집행일정(업무협약서)

- 가. (1회차)업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10,000,000원
- 나. (2회차)전시기본구상 수립 후 30일 이내 : 10,000,000원
- 다. (3회차)전시기본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 : 15,000,000원
- 라. (4회차)참여작가 확정(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 10,000,000원
- 마. (5회차)전시실행계획, 전시장조성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 : 20,000,000원
- 바. (6회차)행사 개막 후 30일 이내 : 20,000,000원
- 사. (7회차)최종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 15,000,000원

□ 전시 및 디자인 전문가(큐레이터, 보조큐레이터 등)는 총감독이 추천하여 서울시와 협약체결 후 업무사례비를 집행

□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민간전문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 : 업무협약서에 의함

- 총감독: 1인당 총100,000천원, 총6회 지급

- (1회차)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10,000천원
- (2회차) 2018년도 프리비엔날레 시작 후 30일 이내 : 금15,000천원
- (3회차) 2018년 12월 15일 : 금10,000천원
- (4회차) '19.3월 프리비엔날레 후 30일 이내 : 금20,000천원
- (5회차) 서울비엔날레 개막 후 30일 이내 : 금30,000천원
- (6회차) 12월 총감독 업무협약 종료시 : 금20,000천원

- 전시 및 디자인전문가(큐레이터) : 1인당 총33백만원, 총4회 지급

- (1회차) 1차 보고서 감독승인 후 15일 이내 : 금5백만원
- (2회차) 2차 보고서 운영위원회 승인후 15일 이내 : 금13백만원
- (3회차) 3차 보고서 감독승인 후 15일 이내 : 금7백만원
- (4회차) 4차 보고서 운영위원회 승인후 15일 이내 : 금8백만원

<붙임 3>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문화본부장
3. 도시재생실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본부장
6. 도시공간개선단장
7. 서울시의원 2명

8.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9.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